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학습부진아 등’에 대해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학교가 아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학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화 하여 정책 대상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 방식대상을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등’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대상을 확대(안 제54조 제3항 제1호)
- 나. 취학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협의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후 예정
3) 규제심사 미심사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제1호의 “학습부진아동이 밀집한 학교”를 “학습부진아동”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적발한”을 “하여 적발된”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또는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 ② (생 략)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1. <u>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u> 에 대하여 교육 · 복지 ·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1. <u>학습 부진아 등</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